

|       |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06303   |
| 의 퇴 인 | 김성원의원     |
| 회 답 일 | 2025.1.6. |
| 추계번호  | 24D5806   |

#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할 경우, 2026~2030년 기간 추가재정소요는 승계참전명예수당을 기존 명예수당의 100%를 지급할 경우, 5,676억원(연평균 1,135억원), 기존 명예수당의 70%를 지급할 경우 2,683억원(연평균 537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| 구분         |                 | 2026 | 2027 | 2028  | 2029  | 2030  | 합계    | 연평균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추가<br>재정소요 | 참전명예수당의<br>100% | 398  | 782  | 1,150 | 1,503 | 1,843 | 5,676 | 1,135 |
|            | 참전명예수당의<br>70%  | 279  | 547  | 805   | 1,052 | 1,290 | 2,683 | 537   |

주: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6조의2(권리의 보호) |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,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, 다만,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며, 이 경우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| 의무규정 |

## 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  |                 |   |   |
|---|-----------------|---|---|
| 1 | 안 제6조의2(권리의 보호) | 0 | - |
|---|-----------------|---|---|

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 발생
- 참전유공자의 유·가족 관련 자료의 부재로 무공수훈자 유배유자율을 적용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
- 개정안은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이 승계될 경우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월지급액은 참전명예수당의 100%를 지급하는 경우와 70%를 지급하는 경우, 두 가지 시나리오로 추계함
-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수당 지급은 법 시행 이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, 법안의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 내역

가.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수급권 승계(안 제6조의2)

(1) 대상자 수

- 참전명예수당 수급대상자는 2023년 연말 기준 13만 2,479명이며, 최근 5년간 연평균 8.7% 감소

[표 2]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현황

(단위: 명, %)

| 구분      | 2019    | 2020    | 2021    | 2022    | 2023    | 연평균증감률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지급인원(명) | 190,329 | 173,733 | 161,577 | 146,932 | 132,479 | -8.7   |

자료: 국가보훈부

-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률 -8.7%를 적용하여 2026~2030년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수를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

[표 3]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수 추정: 2026~2030년

(단위: 명, %)

| 구분      | 2026    | 2027   | 2028   | 2029   | 2030   | 연평균증감률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지급인원(명) | 100,955 | 92,212 | 84,227 | 76,933 | 70,270 | -8.7  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승계 배우자 인원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수가 감소한 만큼 참전유공자 사망자 수로 가정하고, 사망자 수에 유배우자율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신규 미망인 수를 추정
- 전년도 미망인 수 누계에 배우자사망률을 적용하고 신규 미망인 수를 더하여 당해연도 미망인 수 누계를 추정
  - 참전유공자 유배우자율은 무공수훈자 유배우자율 72.1%, 배우자의 사망률은 무공수훈자 배우자 사망률 8.1%를 적용함

[표 4] 참전명예수당 수급 배우자수 추정: 2026~2030년

(단위: 명)

| 배우자 승계        | 2026    | 2027   | 2028   | 2029   | 2030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전체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| 100,955 | 92,212 | 84,227 | 76,933 | 70,270 |
| 추정 사망자 수      | 9,572   | 8,743  | 7,986  | 7,294  | 6,662  |
| 신규 미망인 수      | 6,901   | 6,304  | 5,758  | 5,259  | 4,804  |
| 미망인 누계        | 6,901   | 12,646 | 17,379 | 21,231 | 24,314 |

주: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(2) 지급단가

- 최근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 추이는 아래 표와 같음

[표 5]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현황

(단위: 천원, %)

| 구분    | 2019 | 2020 | 2021 | 2022 | 2023 | 2024 | 연평균증가율 |
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|
| 월 지급액 | 300  | 320  | 340  | 350  | 390  | 420  | 7.0    |

자료: 국가보훈부

- 최근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 연평균증가율 7.0%를 적용하여, 추계기간 동안의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를 추정하고, 승계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참전명예수당의 100%를 지급할 경우와 70%를 지급할 경우 등 두 가지로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음

[표 6]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추정: 2026~2030년

(단위: 천원, %)

| 연도    |                 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연평균<br>증감률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|
| 월 지급액 | 참전명예수당<br>의 100% | 481  | 515  | 551  | 590  | 632  | 7.0        |
|       | 참전명예수당<br>의 70%  | 337  | 361  | 386  | 413  | 442  | 7.0        |

자료: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## 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할 경우, 2026~2030년 기간 추가재정소요는 승계참전명예수당을 기존 명예수당의 100%를 지급할 경우, 5,676억원, 기존 명예수당의 70%를 지급할 경우 2,683억원으로 추계됨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명, 천원, 억원)

| 구분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2026  | 2027   | 2028   | 2029   | 2030   | 합계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
|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배우자 수(명) |              | 6,901 | 12,646 | 17,379 | 21,231 | 24,314 | —     |
| 지급단가(천원/월)          | 참전명예수당의 100% | 481   | 515    | 551    | 590    | 632    | —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참전명예수당의 70%  | 337   | 361    | 386    | 413    | 442    | —     |
| 추가재정소요(억원)          | 참전명예수당의 100% | 398   | 782    | 1,150  | 1,503  | 1,843  | 5,676 |
|                     | 참전명예수당의 70%  | 279   | 547    | 805    | 1,052  | 1,290  | 2,683 |

주: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## 다.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할 경우, 2026~2030년 기간 추가재정소요는 승계참전명예수당을 기존 명예수당의 100%를 지급할 경우, 5,676억원(연평균 1.135억원), 기존 명예수당의 70%를 지급할 경우 2,683억원(연평균 537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8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| 구분         |                 | 2026 | 2027 | 2028  | 2029  | 2030  | 합계    | 연평균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추가<br>재정소요 | 참전명예수당의<br>100% | 398  | 782  | 1,150 | 1,503 | 1,843 | 5,676 | 1,135 |
|            | 참전명예수당의<br>70%  | 279  | 547  | 805   | 1,052 | 1,290 | 2,683 | 537   |

주: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배우자에게 승계되는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참전명예수당의 100%와 70% 두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산정한 결과로, 실제 추가재정 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## V. 작성자

### 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행정비용추계과 | 전수연 | 김안나 |

### 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|
| 전수연 | 02-6788-4667 | syjeon@assembly.go.kr |